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4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7. 10. .  
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사회적경제와 일자리 창출, 노인복지와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 사업 등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의 분장 사항인 “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”을 기획재정국장의 분장 사항으로 이관 (안 제6조 및 안 제10조)
- 나. 노인·장애인을 위한 복지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“사회복지과”를 “어르신·장애인복지과”로 변경 (안 제7조)
- 다.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사회 구현 및 가정복지 증진의 의미를 함께 담아내고자 “보육가족과”를 “여성가족과”로 변경(안 제7조)
- 라. 미래의 주인인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사업의 강화와 노인복지

업무 분리로 “노인청소년과”를 “아동청년과”로 변경(안 제7조)

마. 주민생활국 내 팀업무 조정, 부서 명칭변경에 따른 위상변화로 “복지정책과·보육가족과·사회복지과·노인청소년과·청소행정과·맑은환경과”를 “복지정책과,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, 여성가족과, 아동청년과, 청소행정과, 맑은환경과”로 부서직제순서 변경 (안 제7조)

바. 안 제7조 개정에 따른 조문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국, 과별 구분문장부호인 가운데점(·)을 쉼표(,)로 변경 (안 제3~10조)

### 3.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

나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7. 9. 19. ~ 2017. 10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##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행정관리국·기획재정국·주민생활국·도시관리국·안전건설교통국”을 “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주민생활국, 도시관리국, 안전건설교통국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감사담당관·공보담당관”을 “감사담당관, 공보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총무과·자치행정과·교육지원과·문화체육과·전산정보과·민원여권과”를 “총무과, 자치행정과, 교육지원과, 문화체육과, 전산정보과, 민원여권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기획예산과·재무과·지역경제과·일자리정책과·세무1과·세무2과”를 “기획예산과, 재무과, 지역경제과, 일자리정책과, 세무1과, 세무2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14.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

제7조제1항 중 “복지정책과·보육가족과·사회복지과·노인청소년과·청소행정과·맑은환경과”를 “복지정책과,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, 여성가족과, 아동청년과, 청소행정과, 맑은환경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공동주택과·도시계획과·주거정비과·건축과·공원녹

지과·토지관리과”를 “공동주택과, 도시계획과, 주거정비과, 건축과, 공  
원녹지과, 토지관리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안전관리과·교통행정과·교통지도과·토목과·치수  
과”를 “안전관리과, 교통행정과, 교통지도과, 토목과, 치수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지속발전과·마을공동체과·도시재생과”를 “지속발전  
과, 마을공동체과, 도시재생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도시재  
생·사회적경제”를 “도시재생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 
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3항제1호 중 “노  
인청소년과장”을 “어르신·장애인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 중 “노인청소년과장”을 “어르신·장애인복지과장”으  
로 한다.

②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 
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3호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어르신·장애인복  
지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사회복지과”를 “어르신·장애인  
복지과”로 한다.

- ③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어르신·장애인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- ④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2항제1호 중 “사회복지과장, 노인청소년과장”을 “어르신·장애인복지과장, 아동청년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노인청소년과”를 “아동청년과”로 한다.
- ⑤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3항 중 “노인청소년과장”을 “아동청년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노인청소년과”를 “아동청년과”로 한다.
- ⑥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3항 중 “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, 제4조제4항제1호 중 “도시재생과장”을 “일자리정책과장”으로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어르신·장애인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- ⑦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3호 중 “도시재생과장”을 “일자리정책과장”으로, 제5조제5호 중 “도시재생과”를 “일자리정책과”로 한다.
- ⑧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3항 중 “보육가족과장”을 “여성가족과장”으로,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육가족과장”을 “여성가족과장”으로,

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육가족과장”을 “여성가족과장”으로, 제38조제4항 중 “보육가족과”를 각각 “여성가족과”로, 제40조제1항제3호 중 “보육가족과장”을 “여성가족과장”으로 하고, 제40조제1항제5호 중 “보육가족과”를 각각 “여성가족과”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국·단의 설치)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본청에 <u>행정관리국·기획재정국·주민생활국·도시관리국·안전건설교통국</u> 및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국·단의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<u>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주민생활국, 도시관리국, 안전건설교통국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담당관) 부구청장 밑에 <u>감사담당관·공보담당관</u>을 둔다.</p>	<p>제4조(담당관) ----- <u>감사담당관, 공보담당관</u>-----.</p>
<p>제5조(행정관리국에 두는 과) ① 행정관리국에 <u>총무과·자치행정과·교육지원과·문화체육과·전산정보과·민원여권과</u>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행정관리국에 두는 과) ① ----- <u>총무과, 자치행정과, 교육지원과, 문화체육과, 전산정보과, 민원여권과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기획재정국에 두는 과) ① 기획재정국에 <u>기획예산과·재무과·지역경제과·일자리정책과·세무1과·세무2과</u>를 둔다.</p> <p>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3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기획재정국에 두는 과) ① ----- <u>기획예산과, 재무과, 지역경제과, 일자리정책과, 세무1과, 세무2과</u>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4.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7조(주민생활국에 두는 과) ①</p>	<p>제7조(주민생활국에 두는 과) ①</p>

주민생활국에 복지정책과·보육가족과·사회복지과·노인청소년과·청소행정과·맑은환경과를 둔다.

② (생략)

제8조(도시관리국에 두는 과) ① 도시관리국에 공동주택과·도시계획과·주거정비과·건축과·공원녹지과·토지관리과를 둔다.

② (생략)

제9조(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관리과·교통행정과·교통지도과·토목과·치수과를 둔다.

② (생략)

제10조(지속가능도시추진단에 두는 과) ① 지속가능도시추진단에 지속발전과·마을공동체과·도시재생과를 둔다.

②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2. (생략)

3. 도시재생·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

----- 복지정책과,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, 여성가족과, 아동청년과, 청소행정과, 맑은환경과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도시관리국에 두는 과) ① ----- 공동주택과, 도시계획과, 주거정비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, 토지관리과----- 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 ① ----- 안전관리과, 교통행정과, 교통지도과, 토목과, 치수과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지속가능도시추진단에 두는 과) ① ----- - 지속발전과, 마을공동체과, 도시재생과-----.

② 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도시재생-----

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
3. 미첨부 사유

- 명칭변경, 업무이관 등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추가비용 발생 부분 없음

4. 작성자

- 총무과 김재곤 (2286-5095)

## < 관 계 법 규 >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11. 1.

행정재무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7. 10. 19. 성동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17. 10. 20.

다. 상정일자: 2017. 10. 30.

(제234회 임시회 개최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)

## 2. 제안개요

가. 제안설명: 행정관리국장

나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예정인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의 분장 사항인 “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”을 기획재정국장의 분장 사항으로 이관 (안 제6조 및 안 제10조)

나. 노인·장애인을 위한 복지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“사회복지과”를 “어르신·장애인복지과”로 변경 (안 제7조)

- 다.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사회 구현 및 가정복지 증진의 의미를 함께 담아내고자 “보육가족과”를 “여성가족과”로 변경(안 제7조)
- 라. 미래의 주인인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사업의 강화와 노인복지 업무 분리로 “노인청소년과”를 “아동청년과”로 변경(안 제7조)
- 마. 주민생활국 내 팀업무 조정, 부서 명칭변경에 따른 위상변화로 “복지 정책과·보육가족과·사회복지과·노인청소년과·청소행정과·맑은환경과”를 “복지정책과,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, 여성가족과, 아동청년과, 청소행정과, 맑은환경과”로 부서직제순서 변경 (안 제7조)
- 바. 안 제7조 개정에 따른 조문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국, 과별 구분 문장부호인 가운데점(·)을 쉼표( , )로 변경 (안 제3~10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

나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7. 9. 19. ~ 2017. 10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#### 5.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및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 사업

집중 추진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주민생활국 소속 3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, 일부 부서 사무 분장을 이관하는 등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

- 단 행정기구 개편이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초래 할 수도 있는 바, 시책사업의 효과성 제고 뿐만 아니라 구민의 신뢰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
**6. 질의 및 답변:** 회의록 참조

**7. 토론요지:** 없음

**8. 심사결과:**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
**9. 기타 필요한 사항:** 없음